

해외 저출생 대책과 경기도 시사점

목차

- I. 저출생 원인 진단
- II. 해외 사례
- III. 정책 제언

한국의 저출생은 인구 국가비상사태 수준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현재 저출생 추세를 인구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출생률 반전을 위한 3대 핵심분야 추진 선언
 - ①기업규모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양육을 병행하도록 지원, ②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책임 완성, ③출산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
 - 저출생 대응을 위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출산율 'J커브' 효과 이뤄낸 스웨덴과 네덜란드

- ▶ 스웨덴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가족정책을 추진하면서 성평등 문화와 개인의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면서 출산율 반등에 성공
 - 부모휴가(육아휴직)는 자녀가 12세 될 때까지 아이 한 명 당 480일을 보장하고 급여는 임금의 80~90%를 지급, 육아 연령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 1세~5세 아동 대부분은 어린이집을 다니며 어린이집의 80%가 공립보육시설인데, 0세아의 공보육시설 이용은 불가하여 최소 1년은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1~12세 아동 대상으로 가정탁아제도도 운영
 -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한부모 양육지원, 아동보호수당, 장애아수당, 아동연금(부모 모두 사망 시 18~20세까지 지급), 주거수당, 입양수당 등을 보편적으로 지급
- ▶ 네덜란드는 강력한 공보육이 없어도 정규 시간제 일자리와 유연근로가 일반화되어 있어 육아에 큰 어려움이 없음
 - 가족형태(동거커플, 동성부부 포함)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과 보호자에게 가족정책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가 부여
 - 자영업자도 별도의 출산휴가가 가능하며,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관대한 아동수당이 연령에 따라 지급되며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추가로 수당이 지급됨

정책 제언

- ▶ 자녀 양육을 위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①0세아 가정돌보미 사업 추진 ②아빠 육아휴직(3개월) 의무화하는 시범사업을 도청 및 공공기관 대상 추진
- ▶ 위기임산부를 위한 긴급주택 확대 등 비혼가정 보호체계 강화 및 인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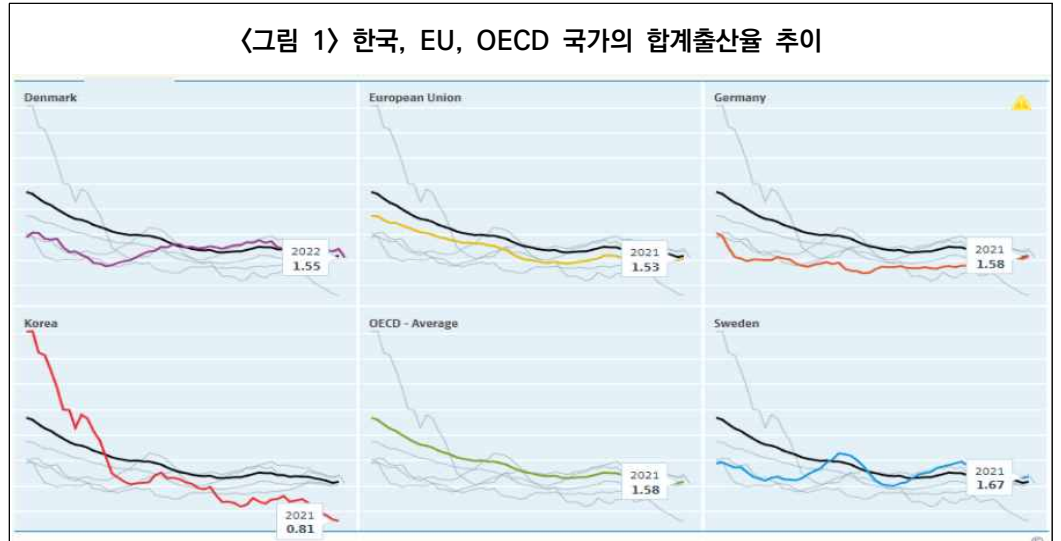


I. 저출생 원인 진단

낮은 출산율은 사회의 활력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희망과 기대를 접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이지만, 그 원인이 복합적이고 구조적이라는 데에 해결의 어려움 있음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 ▶ 거의 모든 선진국이 출생률 하락을 경험하고 있지만, 2021년 기준 한국(0.81명)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1.58명)의 절반 수준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까지 떨어져 세계에서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



출처: OECD(2024). Fertility rates (indicator)(2024.4.13. 접속); 최연혁(2024). "4.10 총선의 여야 저출산 공약 분석과 스웨덴 저출산 정책의 시사점" 경기복지재단 내부 발표 자료

- 이는 높은 자살율과 함께 우리나라가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저출생 자체도 문제이지만, 사회 전반의 활력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앞날과 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접게 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음
- ▶ 결혼, 출산은 매우 개인적인 일이고 사적 영역으로 누구도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으나,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고 구조적임
 - 어떤 삶이든 개인의 선택과 자유이기에 지금과 같이 2030 남녀 모두 거부감을 갖는 '결혼', '출산' 프레임의 출산장려정책이나, 한두 가지의 제도를 바꾸거나, 경제적 지원을 조금 더 해서는 출생률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주로 남성 및 중산층 배경을 가진 정책 입안자들의 지금과 같은 대책으로는 2030세대, 여성, 중하층 청년의 문제에 본질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움
 - 노동인구와 소비인구를 위해 당장 한 명의 아이라도 더 낳아야 한다며 여성을 출산 도구로 여기는 대책의 무용성과 부적절성을 인식하고, '여성'과 '인구'를 '인간'이게 하는 정책들이 필요
 - 결혼보다 '가족구성', 출산보다 '아기 갖기'라는 용어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거부감을 완화하고 가족의 다양성과 다양한 출생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높일 것
 - 경제구조와 복지제도의 전면적 개혁, 각 영역에서의 성평등, 2030세대의 가치관을 반영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

I. 저출생 원인 진단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한 'J 커브'이론에 따르면, 저출생의 원인은 성불평등과 경제적 불확실성

출산율¹⁾ 'J 커브' 이론은 성평등과 경제적 안전이 전제 조건

- ▶ 최근 들어 후기 산업사회에서 경제·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출산율이 반전된다는 'J 커브'(fertility J-curve) 효과 주장이 확산
 - 한 나라의 경제·사회 발전은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인구변천이론(the demographic transition model)과 저출산 덫(the low-fertility trap hypothesis) 가설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음
 -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따른 높은 육아비용,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증가, 가족계획, 높아진 삶의 목표 등이 그 요인으로 20세기 선진국들의 출생률 하락이 이를 잘 보여줌
 - 반면, 최근 들어 후기 산업사회에서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 실제로 함께 출산율이 높아진 선진국들이 많아지면서 'J 커브'(fertility J-curve) 효과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며, 논쟁의 대상도 되고 있음
 - 사회·경제적 발전의 출산율 효과가 확실치 않으며, 어떤 사회경제 지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J 커브 이론의 중요한 함의는 성불평등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핵심 매개 변수가 된다는 점임²⁾

- 높은 성평등 수준과 양호한 경제 전망은 후기 산업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출산율 반등의 전제조건(prerequisites)이 된다고 함
-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변천 이론의 대표적 나라³⁾이나 J 커브 이론에 맞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개인들이 직면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여성의 성불평등 문제가 저출생의 핵심 요인임을 알 수 있음
- 실제로 기존의 많은 연구에 의하면 경제적 문제와 여성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이 저출산의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음

▶ 기존의 많은 연구와 필자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⁴⁾ 결과, 저출생의 가장 큰 요인은 ① 경제적 요인, ②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변화, ③ 불평등과 여성의 높은 기회비용

- 저출산은 가치관, 사회적 분위기, 주거비, 노동시장, 교육, 성평등, 복지 등 거의 모든 사회문화적, 경제적 요인들이 관계된 문제이고,
- 이러한 요인들은 단순히 저출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안전과 행복,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라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은 필수적

1) 최근 '저출산'이 아이를 적게 낳는 주체(여성)에 무게를 두면서 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이 아닌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출생인구가 줄어든다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저출생'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공식문서도 '저출생'으로 표기하기 시작함. 본 연구는 통계수치(합계출산율), 공식발표, 연구(이론) 등 엄밀한 개념어가 필요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함

2) Henrik-Alexander Schubert et al. 2023 "Revisiting the J-shape. Human Development and Fertility in the United States" MPIDR Working Paper WP 2023-022, the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3) 선진국은 인구변천에 100여 년이 걸렸으나 한국은 23년 만에 6명(1960년)에서 2명 아래(1983년)로 떨어져 압축적 인구변천을 겪음

4) 김인춘 외 "수도권 지역 저출산 관련 심층인터뷰 조사 중간발표" 2024.2.27.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I. 저출생 원인 진단

주거와 출산·육아를 위한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출산의 중요 요인

높은 주거비와 양육 교육비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저출생과 긴밀

- ▶ 결혼, 즉 가족구성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거이며, 이에 더해 출산·육아를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이 중요함
 -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상, 혼인을 하락은 출생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혼인을 위해서는 안정된 주거와 일자리가 필수
 - 국세청 자료를 보면 소득 하위 50% 소득자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소득증가액은 100만 원 이하로 이들(자녀)에게 가족구성과 아기갓기 등 결혼/출산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최근 청년층 빈곤도 증가세임

〈표 1〉 통합소득 구간별 1인당 평균소득 추이

(단위: 백만 원, %)

소득구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증가 금액	연평균 증가액	증가율 (5년간)
0.1%	1,471.3	1,516.6	1,662.0	1,849.7	1,796.4	325.1	81.3	22.1
1%	369.1	405.9	431.0	470.0	479.3	83.2	20.8	21.0
1~10%	130.6	132.3	136.7	146.4	151.8	21.2	5.3	16.3
10~20%	61.6	62.2	63.3	65.7	68.3	6.7	1.7	10.9
20~30%	44.4	45.1	45.9	47.5	49.5	5.2	1.3	11.7
30~40%	34.0	34.8	35.6	36.8	38.4	4.5	1.1	13.2
40~50%	26.8	27.8	28.4	29.4	30.9	4.1	1.0	15.2
50~60%	21.4	22.5	23.1	23.8	25.0	3.6	0.9	16.9
60~70%	16.7	17.4	17.7	18.1	19.0	2.3	0.6	13.7
70~80%	11.1	11.3	11.2	11.6	12.0	0.9	0.2	8.5
80~90%	6.0	6.1	6.0	6.2	6.5	0.4	0.1	7.0
90~100%	2.0	2.1	2.0	2.0	2.1	0.1	0.0	6.6

자료 : 국세청

젊은 세대의 높은 물질주의 가치관과 중간 및 저소득층의 탈가족 지향은 비혼 및 만혼으로 이어져 저출생의 원인으로 작용

경쟁주의와 물질주의, 탈가족 지향 등의 사회문화적 가치관

- ▶ 결혼과 출산에 대한 2030세대의 가치관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데 남성들의 가치관도 크게 변화하고 있음
 - 2030 세대의 개인의 주관적 가치 추구하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압력도 거의 없어지고 부담도 거의 없어 성인 이행기가 지연되고 있음
 - 개인의 자유와 주체성이라는 인식이 강해져 이전과 다르게 자유로운 연애와 동거가 가능해졌고 결혼 시기도 딱 정해져 있지 않음
 - 이들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에 거의 동의하지 않으며, 기존의 결혼제도와 출산의 편익은 별로 없고 부담과 비용만 크다고 생각하며, 성역할의 변화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
 -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⁵⁾,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각 질문에 대한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두 질문에 모두 동의하는 사람, 즉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전체의 33%로 가장 다수를 차지

5)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24.6.18.) [2024 자녀·육아인식조사] 자녀의 필요성, 결혼과 자녀계획 등을 조사함

I. 저출생 원인 진단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 즉, 여성의 높은 기회비용은 낮은 출생률로 연결

- ▶ 2030세대는 ‘경쟁주의’와 ‘물질주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며, 중간 및 저소득층의 탈가족 지향은 비혼 및 만혼으로 이어져 저출생의 원인으로 작용
 - 세계가치관조사(WVS, World Value Survey)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전통적 가치와 탈물질적 가치는 낮고, 세속합리적 가치와 물질주의 가치 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남
 - 2030 세대 중 상대적 고소득층은 기혼이 많고 물질 중심의 성공주의 가치지향과 정치적 보수 성향으로 남성의 비율이 조금 더 많고, 저소득층은 생존주의형으로 남녀 모두 1인 가구가 많으며, 중간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물질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가치지향과 1인 가구 및 미혼 여성이 많다고 함⁶⁾
 - 중요한 것은 상대적 고소득층은 결혼을 많이 하며, 중간 및 저소득층은 탈가족 지향을 보인다는 점으로 중하 소득층의 비혼 및 만혼이 저출생률로 이어지고 있음
 - 상대적으로 빈약한 경제적 자원에 더해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사실상 거의 없어지면서 탈가족 지향의 가치관을 가지는 것임
 - 자율적이고 다양한 삶의 방식 존중하고 지원해야 사회적 경쟁을 둔화시키고 가족구성과 아기갓기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성불평등과 여성의 높은 기회비용

- ▶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 육아와 가사의 부담이 큰 여성들, 질 좋은 보육시설의 부족 등이 결혼 불이익(marriage penalty)과 출산 불이익(child penalty)을 초래
 - 남성들은 물론 젊은 여성들도 경제활동이나 성공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 데, 결혼이나 출산이 고용이나 임금, 경력을 단절시킬 수 있다는 불안이 클수록 즉, 기회비용이 높아질수록 혼인율과 출생률이 낮아짐
- ▶ 출산의 주체는 여성이라는 것을 전제한 사회 제도들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여성의 결혼파업, 출산파업은 지속될 것임
 - 여성들의 주체적인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가족의 핵심적 기능 및 가치에 대한 지지와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족과 직장,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가족구성과 출생률 반등이 가능할 것임
 - 한국 외에 대만(0.87명, 2022년), 싱가포르, 일본(1.2명) 등 동아시아의 이른바 ‘유교 자본주의’ 국가들도 결혼 기피하는 세태, 일가정 양립 문제, 유무형의 성불평등,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로 저출생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참고하여 정책의 우선 순위 고려⁷⁾

6) 최중렬 2018 『복학왕의 사회학 - 지방 청년들의 우짚는 소리』 오월의봄; 변미리 2022 “2050 미래서울과 미래세대의 사회적 특성”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김인준 외 2022 『저출산 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인준 외 2023 『출산율 하락 시대의 출생과 가족에 관한 국제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지난 20년 동안 580조 원(66조 엔)의 저출생 예산을 투입했으나 2023년 일본의 합계출산율 1.2명(동경은 1.0명 아래)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최근 ① ‘2040년까지 출산율 1.6명’ 목표로 어린이·육아 지원법을 개정하여 기존 15세에서 18세 자녀까지 부모소득 제한 없이 1명당 연간 최대 6만 엔(약 53만 원) 아동수당 지급 ② 육아휴직 기간 급여도 기존 80%에서 100%로 인상 ③ 일하지 않는 부모도 돌봄서비스 이용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출산을 반전에는 실패하면서 저출생 친화적 시스템구축에 집중하는 일본식 해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정부는 현재의
초저출생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출생률
반전을 위한 3대
핵심분야 추진 선언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조직 신설 및 3대 핵심 분야 추진 선언

▶ 대통령은 20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24. 6.19.)를 주재하면서 현재 저출생 추세를 ‘인구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하고 3대 핵심 대책을 제시

- 저출생은 이미 4·10 총선에서도 여야의 우선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정부는 해외 사례와 그동안 저출생 정책을 재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3대 핵심 분야 및 조직 신설 제안⁸⁾

① 기업규모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양육을 병행

- 엄마와 아빠가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 정착을 위해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고(현재 6.8%→임기 내 50%), 아빠출산휴가기간 확대(10일→20일), 단기 육아휴직 도입(연 1회 2주 단위) 및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1회→3회), 가족돌봄휴가·배우자출산휴가 1시간 단위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최소 기간 3개월→1개월 축소, 자녀 연령 8세 이하→12세 이하, 사용기간 최대 24개월→36개월), 육아휴직 급여 최대 상한 인상(150만 원→250만 원) 및 사후지급금 폐지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원 지급 등

②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책임 완성

- 3세부터 5세까지 무상교육·돌봄 실현, 공공보육이용률 40%에서 50%로 확대,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놀보프로그램 제공
- 출퇴근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 야간연장,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 지원

③ 출산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등 주거에 집중

- 출산가구 대상 12만호 이상 주택 공급,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특별공급 비율 상향,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 대출,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 확대 적용, 결혼 세액공제 추가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 저출생 대응을 위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여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인구전략기획부’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불공정과 양성불평등을 점검하고 중앙-지방 간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과거 권위주의 시기 top-down의 경제기획원 방식은 젊은 세대의 호응과 타 부처의 충분한 협조를 얻기 어려워 저출생 극복 효과는 미미할 것임

- 2030 세대의 ‘통일’이나 ‘국가’에 대한 인식은 기성세대와 확연히 다르며, 자신이나 자기가 속한 집단을 우선하며, 특히 젊은 여성 다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국가가 개인의 임신과 출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큼

- 인구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민관 각 부문의 불공정과 양성불평등을 체크하고, 일자리와 소득 보장, 노동시장의 1차 분배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사회 전반의 긍정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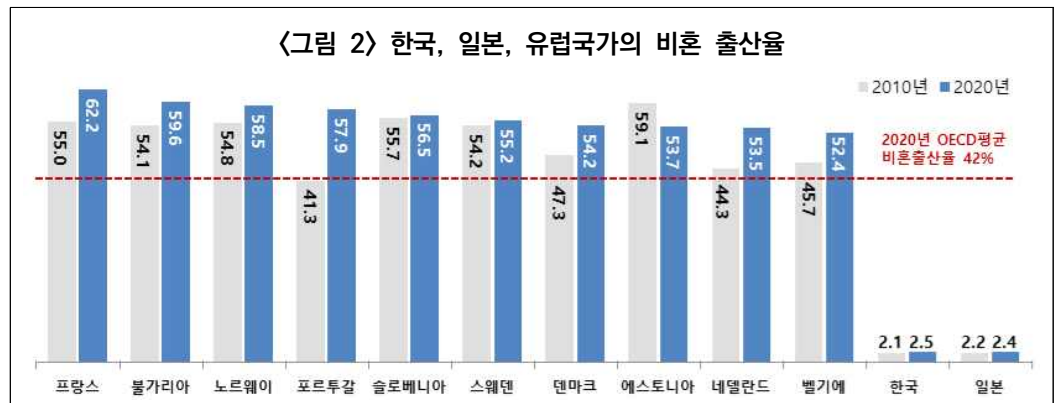
8)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325> 참조

저출생 원인으로
지목된 성불평등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한 스웨덴과
네덜란드 사례를
살펴봄

- 중앙정부의 획일적 저출생 대책을 지방에 일방적으로 통보해서는 저출생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지역 특성 및 개별 현장에 맞게 지방이 정책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마련 등을 돕는 역할이 필요
 - 여러 정부부서와 지자체의 수많은 정책과 제도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통폐합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명확한 역할을 정한다면 의미가 클 것임
 -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상향하여(그 외 현금지원 폐지) 현금지원은 중앙정부에서만 통일해서 하고, 지자체는 법에 따른 현금지원을 실행하고 보육 등 서비스 제공만 지역에 맞게 하는 것이 그것임
 - 일본의 지방정부들이 막대한 재정 지출로 전체 출산율에 도움이 안되는 이주자 및 아기 뺏기 경쟁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기초)지자체도 이러한 모습을 보임
- 그동안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정책 및 재정 효과가 미약한 것은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가치관의 변화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환경이 되기 때문으로 사회적 평등, 가족 및 출생의 다양성 등이 보장된 스웨덴, 네덜란드 사례는 함의가 큼
 - 우리나라에서 젊은 세대일수록 사회적 불공정과 불평등에 민감하고, 가족구성 생각이 약하고, 자녀의 필요성(효용)이 줄고 있고, 가족보다 개인의 자유로운 삶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면서 비혼이나 만혼, 무자녀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

‘J 커브’의 대표적인 사례 스웨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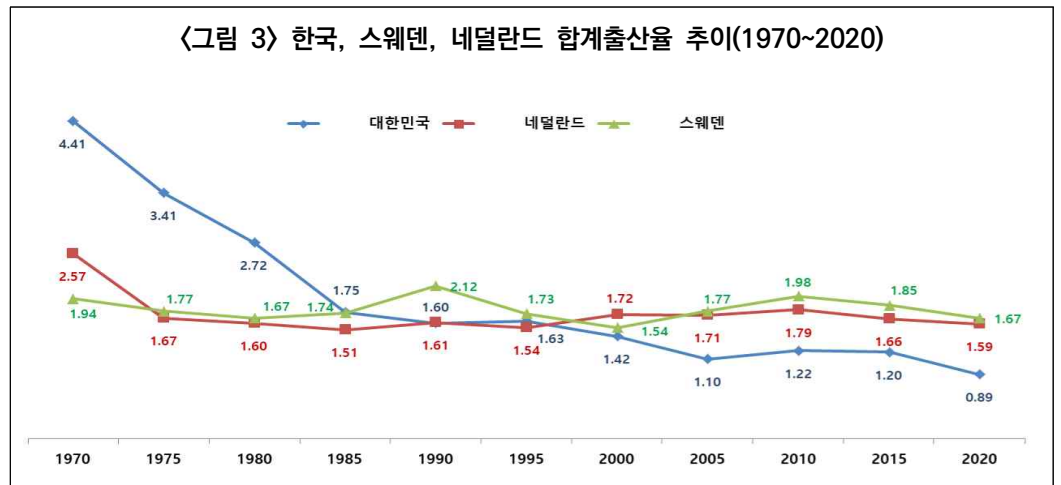
- ▶ ‘결혼과 출산의 분리’라는 유럽식 저출생 해법 전략은 비혼 출생 지원 및 보호로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시행
 - 유럽식 해법이 주는 함의는 가족 및 출생의 다양성,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중되고 제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임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OECD, Family Database(<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 스웨덴은 ‘J 커브’의 대표적인 사례로 성평등 문화와 제도가 뿌리내린 가운데 개인의 소득, 분배를 포함한 경제적 환경이 좋아지면서 출산율이 반등해 왔음
 - 가족정책 뿐만 아니라 분배 및 복지정책, 문화(성평등, 육아규범 등),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 사회공동체와 높은 사회적 신뢰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네덜란드는 출산율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분배정책,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 성평등 문화, 사회적 신뢰, 출산규범 지속 등이 그 요인임

스웨덴은 'J커브'의 대표적 사례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가족정책을 추진하면서 성평등 문화와 개인의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면서 출생률 반등에 성공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7&conn_path=13)

- ▶ 스웨덴은 싱글맘이든 동거커플이든 모든 가정에 육아와 일 병행을 지원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하는 가족정책을 추진하면서 출산율이 높아짐
 - 20세기 초반의 스웨덴은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19세기 후반부터 해외이민이 크게 늘어 인구가 줄었고, 사회계층 간 빈부격차가 심했으며, 노사분규 등 사회갈등도 심했음
 - 1934년 알바와 군나르 뮌르달 부부는 저서 『인구문제의 위기』(*Kris i befolkningsfråga*)를 통해 저출산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출생률 증가 대신 사회 전반적 개혁이 급선무라고 강조함)
 - 모든 가족 구성원이 경제적·정서적 안정을 누릴 수 있어야 가족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보편적 복지 확대를 강조함
 -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1972년 사회민주당 여성협회의 『미래의 가족: 사회민주주의 가족정책』을 통해 선진 스웨덴 가족정책의 표본이 되었음
 - 뮌르달 부부의 주장은 1928년 한손 사회민주당 당수(1932~1946 총리 역임)가 제창한 국가가 모든 국민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인민의 집(Folkhemmet)' 개념과 함께 1930년대 이후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서비스를 중시한 스웨덴 복지국가 발전의 토대가 됨
 - 그 후 스웨덴은 출생율 증가, 여성고용 증가, 성평등,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5년 미혼여성 67.2%, 기혼여성 47.2% → 1981년 미혼 74.4%, 기혼 77.7%로 증가함
 - 스웨덴 가족정책의 목표는 싱글맘이든 동거커플이든 모든 가정에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제공하고 육아와 일 병행을 지원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과 출생률 제고에 기여하는 것임
 - 직접적인 출산장려라기 보다 행복하고 민주적인 가족, 여성경제활동 촉진,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을 목표로 함
 - 여성의 가사노동 역할보다 경제활동 역할을 강조하고, 공보육 정책으로 여성고용을 적극 장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에 이르고 있음

9) 최선경 "가족 중심, 가족 개개인의 행복권을 우선하는 스웨덴 인구정책" 위의 책 김인춘 외 2023, 제7장

스웨덴 가족정책의
핵심은 부모
휴가급여(육아휴직)와
공보육 제도화, 그리고
아동수당

- ▶ 가족정책은 부모의 평등한 양육 책임을 지향하는 출산·육아휴직 제도, 공보육 제도,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제도 등이 핵심임
- ① 출산·육아휴직 제도로는 임신급여, 출산 및 육아휴직, 아버지 휴가, 아동 병간호 휴가 등이 있음
 - 부모휴가급여(육아휴직): 출산이나 입양한 부모에게 아이 한 명 당 480일(평일기준)의 육아휴직 기간 보장
 - 임금의 80~90%를 받으며 부모 중 한 명이 의무적으로 3개월 사용해야함(미사용 시 3개월은 자동으로 없어짐)
 -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30%에 이르며, 부부의 공평한 육아 책임을 위해 도입한 아버지 할당제(father's quota)를 2016년부터 기존 60일에서 90일로 확대 시행함
 - 480일의 출산·육아휴직 기간을 부부가 반반씩 사용할 경우 지급하던 양성평등 보너스(Equality bonus, 소득공제)는 사용실적이 많지 않아 2016년 폐지되었다고 함
 - 출산·육아휴직은 2014년부터(2014년 이후 출생 아동) 8세에서 아동 만12세까지 사용할 수 있게 시기를 확대함
 - 다만, 4세가 넘으면 총 96일간만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 휴가 일수는 사라지도록 함
 -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의 조정 (유연근로 제도): 육아를 위해 초등 저학년까지 근무시간의 75%, 50%, 25%의 유연근로 가능(일부 임금삭감 있음)
- ② 보육제도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탁아, 방과후 학교/여가활동센터(after school, leisure centre) 등이 있음
 - 어린이집(피르스콜라)은 1~5세 아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공보육임(0세의 공보육시설 이용 사실상 불가 - 최소 1년은 육아휴직하도록 함)
 - 기초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립 어린이집이 전체의 약 80%이며, 부모 부담액은 전체 운영비의 10% 수준임. 소득에 따라 일정비용 부담하나 그 비용은 매우 저렴하고 저소득층은 무료임
 - 1~2세 아동의 70% 이상, 3~5세 아동의 거의 100%가 어린이집 다니며, 자연친화적인 교육을 중시하고 있으며, 놀이를 중심으로 예절과 언어, 수학, 미술 등을 가르침
 - 1~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가정탁아제도(family day care,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보는 경우)
 - 전업주부나 파트타임 부모를 위한 민간 어린이집(오픈피르스콜라)도 있음
 - 부모협동보육 활성화 : 개인이나 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민영 어린이집으로 기초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며 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이를 이용하는 아동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공립 어린이집에 미처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 이용함(부모협동보육은 마을공동육아 형태임)
 - 6~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학급(after school 방과후 돌봄)'이 있음
 - 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 유치원(pre-school)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무료임(초중등교육 및 공립대학 모두 무료이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교육은 기초지자체가 관리 운영함)

네덜란드는 정규
시간제 일자리와
유연근로의 선택이
용이하여 출산과
육아에 도움

- ③ 아동수당 제도로는 가장 중요한 기본 아동수당 외에도 한부모 양육지원비, 아동보호수당, 장애아 수당, 아동연금, 주거수당, 입양수당 등이 있음
-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은 사회보장체제와 가족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크게 높임
 - 아동수당에는 기본 아동수당(아동 1인 16세까지 월 약 18만원), 셋째아이부터 받는 추가 아동수당
 - 그 외 아동연금(부모 모두 사망시 18~20세까지 아동에 지급), 입양자녀 수당 및 해외아동 입양과 관련된 비용 지원, 장애아 보호수당(16세 이하 병이나 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지급)이 있음

유연근무가 일반화된 네덜란드¹⁰⁾

- ▶ 네덜란드 가족정책은 스웨덴과 달리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나 강력한 공보육 없이도 정규 시간제 일자리와 유연근로제도가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가능하게 함
 - 역사적으로 네덜란드가 독일과 같은 대륙형 복지모델을 가졌고, 사회문화적으로 제3섹터(비영리영역, 사회적경제)가 강하여 시간제 일자리가 많기 때문
 - 또한, 1982년 노사정간 바세나르협약으로 노동시간이 줄었고, 부부(파트너)가 3~4일 일하고 남성이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근로자는 유연근로를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함
- ▶ 가족형태나 출생,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가족(동거파트너, 동성파트너 포함)과 아동에게 가족정책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가 부여됨
 - 일반적으로 풀타임의 경우 6주의 유급 임신 휴가, 12주의 유급 출산휴가(쌍둥이는 20주), 최대 26주의 육아휴직
 - 출산휴가는 UWW(근로자보험청)이 정한 1일 최고 임금 100% 지급(1일 최대 €256.54)하고, 육아휴직의 첫 9주는 일 최고 임금의 70%(1일 €179.58)
 - 시간제 일자리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모든 혜택이 부여되는데, 주 노동시간의 최대 26배의 육아휴직이 가능함
 - 1일 소득이 사회최소임금(sociaal minimum)보다 적을 경우 UWW의 추가수당법(Supplementary Benefits Act, Toeslagenwet)에 따라 추가로 지원받음
 - 자영업자도 별도의 출산휴가 가능(Maternity Benefit Scheme for the Self-Employed, Regeling Zelfstandige en Zwanger, ZEZ)
 - 아동보육은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공립 어린이집, 가사도우미육아, 마을공동육아, 가족육아 등 매우 다양함
 - 2023년 기준 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당 월 최대 230시간 이용 가능하며, 보육료는 정부에서 세금공제(kinderopvangtoeslag)형태로 지원함(원칙적으로 고용상태거나 학생이어야 함)
 - 풀뿌리 지방자치와 사회적 연대가 강하고, 제3섹터가 발전해온 전통으로 마을공동육아('Buurtgezinnen')가 활발함

10) 김인춘 "네덜란드의 출산을 패러독스와 유연안정성 모델" 위의 책 김인춘 외 2023, 제5장

네덜란드는
등록파트너제도를
도입, 비혼출산이 전체
출생아의 57%를
차지할 정도로 사회적
다양성 추구

- ▶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관대한 아동수당(입양 등 모든 아동 포함)이 있음
 - 아동수당 지원금은 분기별로 0~5세 270 유로(월 약14만원), 6~11세 330 유로, 12~17세 385 유로(16, 17세는 학생이어야 함)를 지급하며,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추가 아동수당이 있음
 - 네덜란드는 다소 보수적인 전통이 살아있어 사회문화적으로 출산규범이 작동하고 있으며, 스웨덴과 같이 가족구성이 자유로워 안정적인 출생율을 가능하게 함
- ▶ 네덜란드는 1990년대까지 법적 결혼커플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의 80%를 차지했으나 등록파트너 제도 도입, 비혼출산 증가 등으로 2022년 법적 결혼커플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42.7%로 축소됨
 - 종교, 이념 등에 따라 구분된 특유의 전통적인 네덜란드 사회(수평적 ‘pillar’ 사회)는 1960년대 말부터 개방적 세속화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 사회적 다양성이 크게 증대되었고 이는 가족/출생의 다양성을 가져옴
- ▶ 정규 시간제 일자리와 유연근로를 통해 시간자원(time resources)을 보장함으로써 출생율을 높임
 - 이는 고유한 네덜란드 사회와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스웨덴의 공보육을 통한 여성의 시간자원 보장과 대비됨
 -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시간제약이 매우 커 여성의 시간자원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므로 공공보육과 유연근로가 함께 작동되어야 출생율 효과가 있을 것임

시사점 1: 여성의 임금 및 고용 안정과 임신·육아를 위한 유연근무 보장

- ▶ 스웨덴식 공공아동돌봄 + 네덜란드식 유연근무 의무화
 - 스웨덴, 네덜란드와 같이 여성들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안전하고, 시간적으로 유연한 환경 →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 출산율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임
 - ‘이상적인 노동자’ 모습을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아닌 가정과 양립할 수 있는 개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문화 개혁이 가장 중요¹¹⁾
 - 임신·육아 여성들이 임금삭감 없이 주 3~4일 근무 등 시간적으로 자유롭게 유연근무(재택 등)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남성육아휴직도 의무화해야 함
 - 네덜란드는 여성/남성의 유연근로 형태가 일반화되어 있어 여성/남성의 일가정 양립이 매우 용이하며, 스웨덴도 여성/남성의 유연근로가 늘고 있는 상황
 -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10.6%)이 상승세지만 여전히 여성(37.2%)과의 격차가 상당하므로 남성들의 육아 관련 제도 사용을 당연하게 여기는 직장·사회문화 조성이 필요하며, 일정 시점까지는 남성의 육아 관련 제도 활용을 강제하는 것을 고려

11)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는 ‘한강의 기적’을 만든 한국의 노동 문화가 저출생 현상을 초래했다고 평가하면서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노동 문화를 바꾸지 않는다면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음(한겨레 기사, 24.6.13). 또한 202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하버드대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도 남성적 ‘greedy work’을 비판하며 이와 유사한 조언을 한 바 있음.

공공돌봄과 유연근무를
토대로 개인적 선택의
문제인 저출생의
어려움을 해결한 만큼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젠더 임금격차는 매우 심각한데, 최근 연구¹²⁾에 따르면, 성별 임금 격차가 전보다 줄어들었고, 그 배경에 경력단절을 우려한 30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노동시장에 남았기 때문에 임금격차 해소도 중요한 저출생 대책
- 2017~2022년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남녀의 실질 임금 격차는 45.4%였고, 2018년 38.0%, 2019년 36.3%, 2020년 31.4%로 좁혀졌지만 2021년 35.0%로 벌어졌고, 2022년에는 34.3%로 다시 떨어져 5년간 임금 격차가 11%가량 감소
- 전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30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뤄 경력단절을 피하면서 여성의 평균 임금이 높아졌기 때문

시사점 2: 실험적이고 구조적인 과감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

- ▶ 사람들이 가족구성이나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는 매우 복잡적이고 구조적이므로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더 좋은 사회, 신뢰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
 - 우리나라에서 젊은 세대일수록 가족 및 출생의 다양성,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수용성이 높으나 사회적, 제도적 여건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인들이 가진 목표를 다양화시켜 젊은이들이 겪는 사회적 무한경쟁과 사회적 비교를 약화시키는 노력 추진
 - 경제구조와 복지제도의 전면적 개혁, 각 영역에서의 성평등, 2030 세대의 가치관을 반영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함
 - 저임금과 주거불안, 불안한 미래, 육아휴직의 어려움과 일가정 이중부담, 싱글맘 등 젠더 폭력, 환멸의 정치 등이 해결되어야 하며, 저성장과 인구감소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중요함
- ▶ 비혼, 만혼, 저출생의 요인이 다양한 만큼 대책도 한두 개만으로 대응할 수 없고,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추진
 - 아동수당 확대 및 인상 등과 같이 바로 시행해야 할 대책과 성평등 및 분배구조개혁 등 단기, 중장기적 구조적 대책을 같이 추진해야 함
 - 저출생 문제가 1, 2차 분배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사회경제적 차원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함
 - 더구나 이러한 대책은 단순히 저출생 대응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적 불신,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중요함
 - 사회적 불평등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인프라가 노인중심으로 되고 젊은 세대는 우리 사회에서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어 가족구성과 아기갖기를 더 기피할 것이므로 젊은 세대가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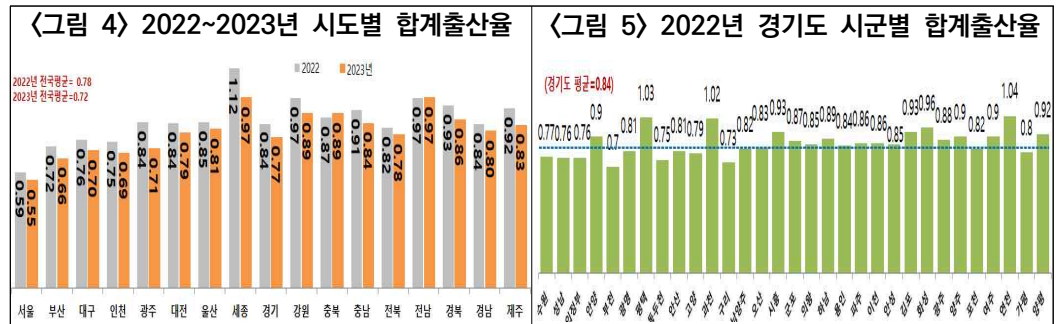
12) 문지선·김남주(2023) "선택편의효과로 본 한국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격차의미" 『시민과 세계』 43호,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자녀 양육을 위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양육의 어려움이 가장 큰 12개월 미만의 0세아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가정돌보미 서비스를 아이돌보미서비스에 추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만들기’에 집중

▶ 경기도는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살고 특히 2030 세대의 유입이 많아 경기도의 출생률이 전국 출생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저출생 정책은 중요

- 2023년 수도권 출생률을 보면 서울 0.55, 경기도 0.77로 나타나 전체 인구의 50.77% 차지하는 수도권 인구를 감안하면 수도권의 낮은 출생률이 전체 출생아 수 감소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31개 시군의 합계출산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22년 기준 연천(1.04명)과 평택(1.03명), 과천(1.02명)은 경기도 평균(0.84명)을 웃도는 반면, 부천(0.7명), 수원(0.77명), 성남(0.76명), 고양(0.79명) 등 인구 규모가 큰 대도시 지역은 0.7명대로 낮은 합계출산율을 견인



자료: 경기도(2023), 「2023년 경기도 출산통계」(좌우)

- 인구는 나라 또는 일정 지역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근간으로, ‘출생’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 구축이 중요함을 해외사례를 통해 확인한 바 과감한 정책을 추진
- 또한, ‘결혼 및 출산 선택 의사가 있는 청년 지원’, ‘1자녀 가족의 추가 출생 가능성 제고 및 지원’, ‘기혼 무자녀 여성’, ‘비혼여성 출생 지원’ 등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집단에 대한 맞춤형 정책 등을 모색

▶ 자녀양육을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① 양육의 어려움이 가장 큰 0세아가 가정에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과 같은 고용상 불이익인 ‘출산불이익(child penalty)’이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를 차지¹³⁾하며, 경력단절의 주된 이유는 출산과 양육
 - 경제활동 참여 여성 중 51.1%가 경력단절을 경험하였고, 그 주된 이유가 출산과 양육(46.9%)이며, 92.8%는 자녀 육아와 교육문제가 해결되었다면 퇴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¹⁴⁾

13) 조덕상·한정민(2024)의 “KDI 포커스: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에 따르면,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급감한 반면,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4%p 줄어드는 데 그쳤는데, 이런 차일드 페널티의 증가는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에 40%가량을 차지했으며 모형별로 30~34세일 때 45.6%, 25~34세 39.6%, 25~39세 46.2% 등으로 나타남. 남성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고용률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출산이 여성에게도 고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정책 추진이 중요함을 시사

14)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24).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자료

**아빠 육아휴직을 최소
3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임신한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긴급주택과
같은 보호체계 마련**

- 자녀양육 중 어린이집 등 시설돌봄이 어려운 12개월 미만의 0세아 양육의 어려움으로 퇴사하는 비율이 높아 이 시기에 가정방문형 돌봄서비스를 제공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24.6.19)에 따르면, 영유아부모 46%가 만24개월 이후 시설돌봄 이용을 희망하고 있고, 스웨덴의 경우 0세아의 보육시설 이용을 허락하지 않고 육아휴직하도록 하는 등 시설보육보다는 가정 내 양육정책 추진
 - 경기도는 7월부터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 대상 가정방문형 긴급돌봄(아이돌봄 서비스)강화 사업 추진에¹⁵⁾ 더하여 0세아 가정에 가정양육돌보미를 부부 출퇴근 시간에 맞춰 종일 돌봄서비스 제공
 - 가정 내 아이 안전을 위해 0세아 돌보미는 엄격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보육교사에 한정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이용요금도 아이돌보미보다 높게 책정, 차액은 도와 시군이 부담
- ② **아빠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시범사업을 도청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추진**

- 6.19대책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현재 6.9%에서 현 정부의 임기까지 50%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등 자녀양육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유도
- 경기도는 도청 및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아빠 육아휴직을 최소 3개월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아·육·의(아빠육아휴직의무)’를 시범사업으로 추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확산

- ▶ **결혼과 출생은 개인선택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가족 및 출생 방식을 존중하고 긴급주택과 같은 보호체계 강화**
 - 2020년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¹⁶⁾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며, 이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5년 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
 - OECD국가의 비혼출산율이 약 42%로 매우 높는데 비혼 동거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프랑스의 팩스(PACS·시민연대계약)이 대표적
 - 우리나라는 임신부와 신생아 보호를 위해 출산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¹⁷⁾ 관련 법을 제정하고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 마련이 중요
 - 보호출산제의 경우 16개 광역 시·도에 출산지원기능을 하는 한부모가족시설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위기임산부 상담과 긴급대응을 위한 전용 전화 1308번을 운영
 -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통해 출산과 출산이후 양육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하므로, 긴급주택 기능을 하는 시설을 확대
 -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미혼모 상담과 지원을 해왔으나 근거법이 마련된 만큼 출산지원기능의 한부모가족시설을 확대¹⁸⁾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15)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핫라인콜센터로 연락하면 주말과 야간에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시설과 가정방문형 돌봄을 연계
 16) 여성가족부(2021). “2020 가족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 낳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비율이 2015년 9.4%에서 2020년 15.4%로 63.8% 증가함
 17) 출산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의 출생정보를 국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제도로 미등록 아동 발생 방지를 통해 아동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임.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숨긴 상태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 병원 밖에서의 출산을 방지해 임신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아이가 유기되거나 살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함임
 18) 한부모가족시설은 시설에 따라 출산지원, 양육지원, 생활지원, 일시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경기도에는 총 13개소(보조금 지원 10, 미지원 3)가 있고, 출산지원기능 시설은 4개소(보조금 지원 2, 미지원 2)가 있음(<http://www.womenbokji.or.kr/>)